

30억원 미만 소액공모에서 투자자는 무엇을 읽나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대기·정정요구와 제125조의 손해배상 구조가 그대로 붙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발표, 현행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20조와 발행공시규정을 대조해 30억원 미만 소액공모와 증권신고서 공모의 절차·책임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8.25	연번	2026_58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소액공모 한도 확대의 핵심을 공시 서류의 분량보다 검증 절차의 차이에서 봐야 한다고 판단한다. 소액공모도 무공시가 아니지만 증권신고서처럼 효력발생 전 대기과 정정요구를 거치는 구조는 아니다. 정보가 거짓이거나 빠졌을 때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특별한 손해배상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구분해야 한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2026년 8월 4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30억원 미만 공모는 소액공모서류를 공시하지만, 증권신고서에 붙는 사전 심사 시간과 정정 절차, 특별 손해배상 규정은 같지 않습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의 개정으로 2026년 8월 4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이 과거 1년간 신고하지 않은 모 집·매출 합계 30억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 기준	10억원 이상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현행 기준	30억원 이상	2026년 8월 4일 시행
30억원 미만	소액공모서류	증권신고서 대신 전자공시
공모 판단	일반투자자 50인 이상	청약 권유 기준
VC펀드	인원 산정에서 제외	2026년 7월 28일 발행공시규정 시행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30억원 미만도 증권신고서	조각투자 예외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21일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넓히는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령 제36543호는 7월 28일 공포됐고, 현행 법령 표시는 8월 4일 시행입니다.

소액공모는 공시가 없는 사모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130조와 시행령, 발행공시규정에 따라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공모 내용을 소액공모공시서류로 전자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설명했듯 증권신고서는 효력발생과 정정요구 절차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별도 수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비정형성과 기초자산 평가 문제 때문에 30억원 미만이어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증권신고서는 제출만으로 바로 청약을 시작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의 효력발생 기간을 지나야 하고, 중요한 사항이 빠지거나 거짓이면 금융위원회가 제122조에 따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공모서류는 발행 전후 필요한 내용을 전자공시하지만 같은 사전 효력발생 대기와 정정요구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시간은 짧아지지만, 투자자는 청약 전에 서류의 숫자와 위험을 스스로 비교해야 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자본시장법 제125조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이 거짓이거나 빠져 손해가 생긴 경우 발행인·이사·인수인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특별 규정을 둡니다. 소액공모서류의 허위·누락에 일반 민사책임이나 제재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125조 구조가 그대로 붙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도는 한 번의 청약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20조는 모집·매출하려는 금액과 과거 1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매출의 합계를 봅니다. 29억원을 여러 차례로 쪼개도 합산 기준을 피할 수 없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모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입니다. 이전에는 증권신고서 대상이던 구간이 소액공모로 이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29억원 공모에 100명이 같은 금액으로 참여하면 1인당 2,900만원입니다. 회사가 이미 과거 1년 동안 신고서 없이 2억원을 공모했다면 합계 31억원이 되어 현행 기준상 증권신고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소액'이라는 이름을 손실 한도나 안전성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소액은 발행인의 공모 총액을 가르는 규제 용어이지 개인의 투자금이나 손실 규모를 제한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례 공모액	29억원	30억원 미만 소액공모 구간
100명 균등 참여	1인당 2,900만원	29억원 ÷ 100명
과거 1년 공모 2억원	합계 31억원	29억원 + 2억원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사전 검증

소액공모서류의 허위·누락을 청약 전에 걸러내는 별도 수리·정정 절차는 증권신고서와 같지 않습니다.

02 · 책임 경로

허위·누락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어떤 법률과 증거로 배상을 청구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03 · 공모 합산

발행인의 과거 1년 무신고 공모 내역을 투자자가 한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는 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04 · 제도 성과

한도 확대가 실제 자금조달 건수와 투자자 손실·정정 비율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는 시행 뒤 자료가 필요합니다.

05 · 지금 할 일**지금 할 일****국민**

- 청약 전 DART에서 증권신고서인지 소액공모공시서류인지 문서 이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 발행인 재무상태, 자금 사용목적, 최대주주·특수관계인 거래, 투자위험과 최근 공모 내역을 대조합니다.
- '30억원 미만'은 손실 제한이 아니라 발행공시 절차를 가르는 기준임을 기억합니다.

금융회사

- 소액공모를 중개할 때 증권신고서 공모와 다른 절차·책임 구조를 청약 화면에 표시합니다.
- 과거 1년 무신고 공모 합계와 이번 공모액의 계산근거를 발행 전 점검합니다.

당국

- 소액공모서류의 정정·취소·제재와 투자자 손실을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 DART에서 발행인별 과거 1년 소액공모 금액과 문서를 묶어 볼 수 있게 합니다.

갈림길**한도 확대 뒤 소액공모의 정정·손실 정보가 함께 공개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한도는 이미 확대됐지만 확대 구간의 허위·누락, 정정과 투자자 손실을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A

조달 실적만 공개
발행 건수와 금액만 늘었는지 보게 되어 절차 완
화의 투자자 비용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B

오류·손실도 공개
정정·취소·제재·분쟁을 함께 공개하면 30억원 미만
구간의 정보위험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2027년 소액공모 통계와 DART 공시서식·검색기능 개편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4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브리프 IPO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은 누구를 보호하나 ↗

금융제도 기업공시제도 ↗

금융제도 수시공시와 공정공시 ↗

피해구제 자료열람요구권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8건

01	1차 · 소액공모 범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21일 보도자료 원문 열기 ↗
02	1차 · 현행 시행령 제120조는 과거 1년 무신고 모집·매출 합계 30억원 이상을 증권신고서 대상으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원문 열기 ↗
03	1차 · 대통령령 제36543호는 2026년 7월 28일 개정, 현행 표시는 8월 4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원문 열기 ↗
04	1차 · 발행공시규정은 2026년 7월 28일 시행,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원문 열기 ↗
05	1차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과 정정신고서 요구 자본시장법 제120조·제122조 원문 열기 ↗
06	1차 ·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허위·누락의 손해배상 책임 자본시장법 제125조 원문 열기 ↗
07	1차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모집·매출의 공시의무 자본시장법 제130조 원문 열기 ↗
08	파생 · 29억원을 100명이 균등 참여하면 1인당 2,900만원, 과거 공모 2억원을 더하면 31억원 29억원÷100명, 29억원+2억원의 산술 예시. 실제 공모와 무관

추적 예정	2027년 소액공모 건수·금액, 확대 구간의 정정·취소·제재·분쟁 통계와 DART 검색기능을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분 연번 NB-2026-072를 실제 공개 순서에 맞춰 NB-2026-058로 바로잡았습니다. 제목의 '30억 원까지'를 법문에 맞춰 '30억원 미만'으로 고치고, 시행령 시행일을 2026년 8월 4일로 정정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발행인의 공식 입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정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